

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노무관리 안내

1. 주요 내용

① 주요 노무관리

-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강제사용은 불가함
-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(이전 3개월) 산정 시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

②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

- 코로나19로 인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

※ 신청·접수 : 국민연금공단 각지사

③ 고용유지 지원제도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의 감원 없이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업·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

※ 신청·접수 : 고용복지센터(기업지원과)

④ 생활안정자금 용자제도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용자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

※ 신청·접수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지사

2. 세부 내용

① 주요 노무관리

(1) 휴업수당

- 사업장에서 확진환자 발생하여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 권고
- ※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
-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*을 지급하여야 함
- * 평균임금의 70% 이상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70%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

(2) 연차휴가

- 연차유급휴가는 인원부족, 휴가청구일 집중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,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

(3) 퇴직급여

-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,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,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제외
- ※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 기간의 최초일(휴업시작일 등)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

(4)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

- 유연근무제*를 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일정금액** 지원
- * 시차 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
- ** 주 3회 이상 주당 10만원(연간 520만원), 주 1~2회 주당 5만원(연간 260만원)

②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

(1) 지원 내용

- 코로나19로 인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노동자*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**에 대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

*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입원자 또는 보건소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

**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

-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산정*하며, 대상기간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**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임

* 1일 과세대상급여액(최대 13만원) x 유급휴가 기간

**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(퇴원) 된 날까지의 기간

(2) 신청 절차

- 국민연금공단 각지사(전국 109개)에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
<구비서류>

-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
-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- 입원자 :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
 - 격리자 :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
-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
-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'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' 1부
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
-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
 -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, 법인은 법인 통장

※ 신청·문의처 : 국민연금공단 본부(063-713-5666) 및 각지사(별첨 보도자료 참조)

3 고용유지 지원제도

(1) 지원 내용

-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며,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기간 인상 지원

-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에 대한 지원비율을 상향

· 우선지원대상기업 : 기존 2/3 → 3/4

· 그 외 기업 : 기존 1/2 → 2/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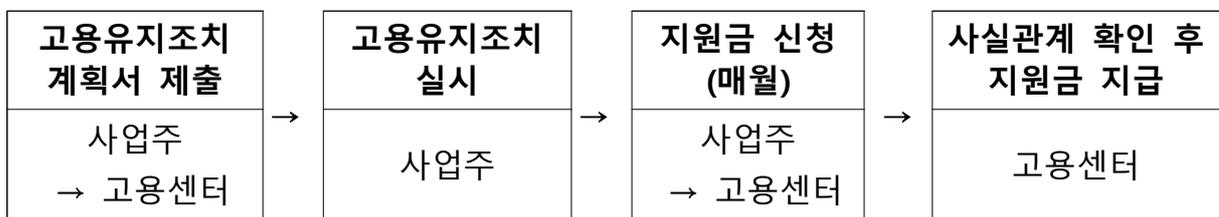
※ 1일 지원금액 상한액 66,000원, 월 30일 기준 198만원

- 특히, 코로나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6개월간('20. 2. 1~7.31)*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·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

* 이번 대책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, 향후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적용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

(2) 신청 절차

-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「고용유지조치계획서」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한 후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·휴직수당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



※ 신청·문의처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, 전화 국번없이 1350 또는
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, 기업지원과(workplus.go.kr)

4 생활안정자금 응자제도

(1) 지원 내용

-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응자의 월평균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('20. 7.31까지)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

- 정규직 : 기존 259만원 이하(3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/3)

→ 388만원 이하(3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)

- 특수형태고용종사자* : 기존 259만원 이하(3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/3)

→ 소득액 불문

*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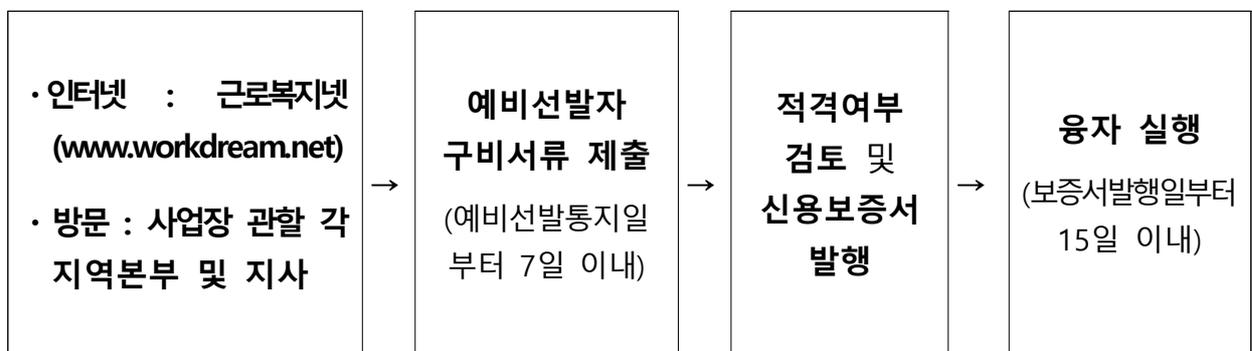
※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액 불문

-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·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% 이상 감소한 근로자 등은 「임금감소 생계비」 또는 「소액 생계비」, 임금체불 근로자는 「임금체불생계비」 응자 활용 가능

※ 연 1.5%의 이율로 무담보 대출, 1인당 최대 2,000만원 한도

※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, 연 0.9%~1% 보증료 신청인 부담

(2) 신청 절차



※ 신청·문의처 :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, 전화 국번없이 1588-0075